

2021년도 제1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8.(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홍지만(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3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14건(안전번호 제2021-61729호~6195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61729호~61746호는 웹하드, ◎◎◎ 카페 및 블로그에 만화 및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5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3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홍지만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1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61729호~61746호는 민원인들이 신고 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 카페 및 블로그에 게시된 만화 및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

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순번 일부의 경우 한 명의 민원인이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신고하였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포상이 존재하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일부 민원인의 경우 한 사이트 내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신고하거나 한 번에 대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함. 전부 자발적인 신고로, 별도의 포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C 위원: 신고에 대한 보상 자체가 전혀 없는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작년의 경우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라는 명칭으로 불법복제물 신고 캠페인을 진행해 상위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했던 바 있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1-61729호~6174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61729호~6174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61747호~6195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영화)비와 당신의 이야기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61796호 ‘(영화)비와 당신의 이야기 (2020)’는 2021. 4. 28. 개봉한 한국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185포인트에 판매 중임.

(영화 ‘(영화)크루엘라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61806호 ‘(영화)크루엘라 (2021)’는 2021. 5. 26.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210포인트에 판매 중임.

(음악 ‘(음악)Butter (가수: 방탄소년단)’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61917호 ‘(음악)Butter (가수: 방탄소년단)’는 2021. 5. 21. 발매한 음원으로 웹하드에서 5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533건에 대해 시정 권고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61747호~6195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C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61747호~6195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61729호~61746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61747호~6195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이 제1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4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15.

분과위원장 홍지만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